

#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I . 회부경위

- 의안번호 : 제3198호
- 발의자 : 황철규 의원
- 발의일자 : 2025. 10. 20.
- 회부일자 : 2025. 10. 23.

### II . 제안이유

- 지역사회 특색을 반영하여,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를 열어가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교육(지원)청과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.
- 조례 명칭을 ‘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’에서 ‘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’으로 변경하여 사업 목적과 취지를 보다 구체화하고자 함.

### III . 주요내용

-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의 목적 (안 제1조)
-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정의(안 제2조 제2항)

3.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범위(안 제4조)
4.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의 지정 및 운영 (안 제5조 제2항)
5. 명칭 변경(안 제명, 안 제1조, 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, 제10조, 제11조)

#### IV. 참고사항

1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2. 기타  
○ 입법예고(2025. 10. 28. ~ 2025. 11. 1.) 결과: 의견 없음.

## 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박광선)

### 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20일 황철규 의원에 의해 의안 번호 제3198호로 발의되어 2025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‘서울미래교육지구’ 사업이 ‘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’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.

### 2. 주요 검토의견

#### 가. 조례제명 및 관련 조항 변경 검토

- ‘서울미래교육지구’는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연계 교육협력 사업이나 ‘미래교육’이란 용어가 디지털·AI 교육 사업 등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고, 동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자치구와 협력하여 지역과 연계된 교육사업을 추진함을 사업명이 대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‘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’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에 동 사업에 대한 교육지원청과 자치구 간 협의체 구성·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향후 자치구와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며<sup>1)</sup>, 교육지원청 및 자치구 협력 이외에도 광역단위(서울특별시교육청 - 서울시) 및 학교단위(학교-구청 등)의 협력체계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<sup>2)</sup>.

---

1)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(2025).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협의체 구성·운영 계획(안).

2)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(2025.10.). (가칭) 서울교육협력특구 명칭 변경 계획(안)(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보고자료)

-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 제명을 ‘서울미래교육지구’에서 ‘서울교육 협력특화지구’로 변경하여 동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인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간의 협력체제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
- 한편 조례 제명이 변경될 경우, 조문 내용에 포함된 ‘서울미래교육 지구’라는 용어도 ‘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’로 변경되어야 하는바, 조문에 ‘서울미래교육지구’가 포함된 안 제1조(조문), 안 제2조(제1호, 제2호) 안 제3조(제1항, 제2항) 안 제4조(조항명 및 각호를 제외한 조문), 안 제5조(조항명, 제1항, 제2항, 제4항, 제5항, 제6항), 안 제6조(조항명, 제1항, 제2항제1호, 제2항제2호, 제2항제3호, 제2항제4호), 안 제7조(조항명 및 조문, 각 호), 안 제10조(제1항~제3항), 안 제11조(조문)에서 ‘서울미래교육지구’를 ‘서울 교육협력특화지구’로 변경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라 생각됩니다.

#### 나. 안 제2조제2호(미래교육지구 사업 정의)에 대한 검토

- 안 제2조제2호는 ‘미래교육지구’를 ‘교육협력특화지구’로 변경하는 것 이외 ‘공동으로 지원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’을 ‘협력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여 어린이·청소년의 미래 역량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’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이는 서울시교육청의 ‘2025~2026 서울미래교육지구 기본 계획’에 따르면 종전까지 추진해온 ‘서울미래교육지구’는 지역연계교육 과정과 청소년 돌봄 및 방과후, 그리고 자치구 특화사업이 주요 내용이었으나, 2026년부터 추진되는 ‘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’는 지역 특색사업의 운영과 학교-지역사회의 연계 및 협력 강화, 그리고 학생 맞춤통합지원이 주요사항인바,

안 제2조제2호는 ‘교육협력특화지구’를 별도 정의한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.

### [표-1] 서울미래교육지구 추진 방향<sup>3)</sup>



#### 다. 안 제4조(미래교육지구 사업 정의)에 대한 검토

- 안 제4조는 ‘미래교육지구’를 ‘교육협력특화지구’로 변경하는 것 이외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각 호(제1호~제4호)에서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각 호로 규정된 동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‘서울특별시교육청과 자치구의 지역 특화사업(제1호)’, ‘어린이·청소년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지역 연계 교육(제2호)’, ‘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한 학교 및 어린이·청소년지원(제3호)’입니다.
- 이와 관련하여 동 사업의 중점 과제를 살펴보면, ‘지역연계·협력강화’, ‘지역연계 교육과정 운영·지원’, ‘지역 연계 학생 성장지원 체계 구축·운영’으로 구성되어 있는바,

안 제4조제1호~제3호는 각각 동 사업 중점 과제에 따른 세부추진내

3)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(2025.2.). 2025~2026 서울미래교육지구 기본 계획.

용인바, 안 제4조제1호~제3호는 동 사업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.

- 그리고 안 제4조제4호는 중복 문구를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므로 별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

#### [표-2] 서울미래교육지구 중점 과제 및 세부 추진 내용<sup>4)</sup>

중점 과제	세부 추진 내용
지역연계 · 협력 강화	1-1. 지역과 함께 만드는 학교-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1-2. 지역연계 협력 강화를 위한 행정적 운영 지원
지역연계 교육과정 운영 · 지원	2-1.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2-2. 지역연계 교육과정 운영 · 지원
지역연계 학생성장지원체계 구축 · 운영	3-1. 지역연계 학생맞춤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 3-2. 지역연계 학생맞춤통합지원 운영 · 지원

#### 라. 안 제5조(미래교육지구의 지정 및 운영 등)에 대한 검토

- 안 제5조제1항은 ‘자치구를’ 을 ‘자치구와 협약을 체결하여’로 변경하며, 안 제5조제2항은 지정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매년 평가를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의 ‘(가칭)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협약 계획안’에 따르면 동 사업은 자치구와의 협약 체결 이후 교육 협력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, 협약은 해지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매년 자동 갱신되고 있는바<sup>5)</sup>, 안 제5조제1항 및 안 제5조2항을 개정하는 것에 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

4)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(2025.2.). 2025~2026 서울미래교육지구 기본 계획.

5)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(2025.10.). 「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」 업무협약 계획(안).

## 마. 안 제8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에 대한 검토

- 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은 기존 위원 구성을 당연직 위원(제2항)과 위촉직 위원(제3항)으로 구분하면서 당연직 위원에 부교육감, 기획조정실장 및 부서장으로 규정하고, 위촉직 위원(제3항)은 ‘교육지원청 및 자치구’ 소속 공무원을 국장급에서 일반 공무원으로 변경하며(제1호), 위촉위원 중 ‘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원(제3호)’을 추가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아울러 안 제8조제4항은 기존 ‘민간위원’을 ‘위원’으로 변경하고 안 제8조제5항은 ‘미래교육지구’를 ‘교육협력특화지구’로 변경하는 것 이외 간사를 사업 담당 ‘과장’에서 ‘장학관 또는 사무관’으로 변경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먼저 안 제8조제2항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부교육감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, 이는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책임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한편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개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다음으로 안 제8조제3항에서 위촉직 위원 중 ‘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원(제3호)’을 추가한 것은 동 사업이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것이므로 교원이 참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
- 아울러 기존 ‘교육지원청 및 자치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’을 ‘교육 지원청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’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원회 구성의 유연성과 실무에 대한 전문성은 강화되는 반면 위원회의 대표성과 정책 결정에 있어 연계력을 다소 약화될 수 있는바, 직급 요건의 최소 기준을 설정하거나 의사결정에 대한 연계 장치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또한 안 제8조제3항제4호에서 기존 ‘외부전문가’를 ‘지역사회 및 교육 전문가’로 변경한 것은 동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외부전문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.
- 다만, 안 제8조제3항은 위촉직 위원을 “교육감이 위촉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, 안 제8조제3항제1호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이, 안 제8조제3항제3호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,

소속 공무원의 경우 교육감이 “위촉” 하는 것이 아니라 “임명” 하여야 하므로<sup>6)</sup> 안 제8조제3항의 “교육감이 위촉”은 “교육감이 임명 · 위촉”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한편 안 제8조제3항은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  - 이는 기존 ‘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’가 되도록 규정한 것에 비해 위원들 구성에서 민간위원의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바,

서울시교육청은 동 위원회가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민간위원에 대한 적정 비율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다음으로 안 제8조제4항은 ‘민간위원’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동 조항의 ‘민간위원’을 ‘위원’으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.
  - 이는 기존 ‘민간위원’ 이외 당연직 위원 등의 공무원이 포함되는 것인바, 공무원의 경우 위원 임기가 해당 직 재직기간과 연계되므로 민

---

6) 법제처(2022.8.).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. 223페이지.

간위원과 동일하게 규정할 수 없으나 동 조항에 단서조항(‘다만, 공무원 및 선출직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’)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‘민간위원’을 ‘위원’으로 변경해도 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

- 마지막으로 안 제8조제5항은 간사를 사업 담당 ‘과장’에서 사업 담당 ‘장학관 또는 사무관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이는 당연직 위원에 부서장이 규정됨에 따라 팀장급인 장학관 또는 사무관은 위원회 운영 실무를 전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.

## 바. 기타

- 그 외 안 제3조에서 ‘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’을 ‘기반을 조성하기 위해’로 변경, 안 제5조제5항의 ‘해지 할’을 ‘해지할’로 변경, 안 제6조제2항제3호에서 ‘지도·점검’을 ‘지원 체계’로 변경, 안 제11조에서 ‘대학 및 기업 등’을 ‘지역기관, 대학 및 기업 등’으로 변경하는 것 등은 동 조례 사업 목적 및 취지를 반영하고 조문 오기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.
  -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도 의견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13602., 2025.10. 30.).
- 이상으로 「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**

의안심사지원팀장	정진국(2180-8263)	입법조사관	이가영(2180-8270)
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